

고성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(의안번호 제768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0. 28 고 성 군 수
- 나. 회 부 일 자 : 2002. 10. 28
- 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11. 5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현행 29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유사한 품목간에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

3. 주요골자

- 현행 조례상의 대형생활폐기물 품목 “29종”을 “60종”으로 세분화 (고성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4조 제1항 제2호 별표3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,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, 시행해 오던 우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대형 생활폐기물의 품목을 확대 세분화하여 품목별 수수료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
-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, 경남도의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지침에 준거하였으며 입법 예고등 절차를 거쳐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폐기물 항목중 경운기, 콤바인등 농기계 품목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고철 수집상에서 고철대금을 지불하고 수집해 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폐기물로 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?
- 답 : 물론 고철수집상이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폐기물로 배출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2. 11. 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